

NSL1.76

인권정보자료실
NSL1.76

책갈피 출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견서

〈개정증보판〉

책갈피 출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견서

가격 : 1,500 원

인권정보자료실
NSL1.76

사상·출판의 자유 쟁취와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 011-9897-7899
019 - 224-4038

책갈피 출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 견 서

1. 책갈피 출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견	5
2. 변론요지서	23
3. 홍교선 씨 최후진술문 I	49
4. 홍교선 씨 최후진술문 II	59
5. 성명서	67

사상·출판의 자유 쟁취와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책갈피 출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견

정성진(경상대학교 교수)

수신 : 서울지방법원

발신 :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제목 :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72446호' 공소장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견

일자 : 1999년 10월 25일

1999년 7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아래 9종의 도서를 포함한 11종의 도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 책들을 출판 유통한 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홍교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사회과학연구소장 겸임)이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전공하며 문제가 된 아래 책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과 토니 클리프 저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역자이기도 한 본인은 검찰의 이와 같은 처사가 자 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1. 존 몰리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John Molyneux, *What Is the Real Marxist Tradition*, Bookmarks, London, 1981)
2. 던컨 헬러스,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Duncan Hallas, *Trotsky's Marxism*, Bookmarks, London, 1979.)
3. 던컨 헬러스,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Duncan Hallas, *The Comintern*, Bookmarks, London, 1985)
4. 토니 클리프, 『레닌 1』(Tony Cliff, *Lenin*, Vol.1, Bookmarks, London, 1986.)
5.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Alex Callinicos, *The Revolutionary Ideas of Karl Marx*, Bookmarks, London, 1983)
6. 토니 클리프, 『소련 국가자본주의』(Tony Cliff, *State Capitalism in Russia*, Bookmarks, London, 1988)
7. 크리스 하먼,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Chris Harman, *How Marxism Works*, Bookmarks, London, 1988)
8. 존 몰리뉴, 『마르크스주의와 당』(John Molyneux, *Marxism and Party*, Bookmarks, London, 1978)
9. 토니 클리프, 『로자 르SamsungLuxemburg, Bookmarks, London, 1969.)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72446호' 공소장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도서에 대한 의견

서울지방검찰청 (이하 '검찰'이라고 약칭)은 '99형제72446호' 공소장에서 상기한 9종 도서에서 각각 3~9 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각 도서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렸다.

1.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3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이 사회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찬양 선동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내용" (공소장 3쪽)이라고 판정.
2.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에서, 4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학설에 따라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및 공산당의 임무를 주장하는 내용" (공소장 7쪽)이라고 판정.
3.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의 역사』에서, 7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트로츠키 노선에 입각하여 1919년부터 1943년 동안의 코민테른 운동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동자권력, 반제국주의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등 현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 (공소장 11쪽)이라고 판정.
4. 『레닌 1』에서, 2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혁명투쟁 경험을 서술하면서 스탈린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정통 맑스주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며 맑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 특히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실천 투

- ~쟁 경험은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등 사회주의 혁명 투쟁 의식을 고취 선동하는 내용"(공소장 16쪽)이라고 판정.
5.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에서, 6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공소장 22쪽)이라고 판정.
 6. 《소련 국가자본주의》에서, 9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칼 마르크스에서 기원 된 공산주의 자체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동에 의해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정당화하는 내용" (공소장 29쪽)이라고 판정.
 7.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에서, 8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계급투쟁과 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노동가치이론, 사회주의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 활동가들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 (공소장 33쪽)이라고 판정.
 8. 《마르크스주의와 당》에서, 8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정당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 (공소장 39쪽)이라고 판정.
 9. 《로자 루셈부르크》에서, 6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노동자 계급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 (공소장 43쪽)이라고 판정.

그 다음 검찰은 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홍교선이 위 9종 도서의 내용이 위와 같이 판정된 것과 같은 줄 인식하고서도 판매했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9년 7월 6일 홍교선을 구속 기소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먼저 문제가 된 위 9종의 도서는 그 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모든 인문사회과학도서는 '진보', '보수' 혹은 '중도'와 같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모두 고급 학술 도서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법정이 아니라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 선 오늘 아직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야만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명사회 국제적 수치이다. 학술 연구 도서에서 멋대로 발췌한 다음 그 책의 내용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획책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판정하고 그 도서를 출판 유통시킨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인권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제적 웃음거리이다.

검찰은 위 9종의 도서들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이 책을 출판 유통한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된 위 9종 도서들의 내용이 검찰이 판정한대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검찰의 주장처럼 이 책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출판 판매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 책을 출판 판매한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마르크스의 사상의 핵심이 검찰의 표현대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것임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해설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자는 주장의 원조인 마르크스 자신의 책들을

출판한 출판사 그리고 역자들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마르크스의 원전이 수십 종 출판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해설하는 등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공산주의 관련 서적은 이미 수백 종 출판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작,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의 원전'은 『자본론』과 『공산당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자본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김수행 교수가 번역하여 비봉 출판사가 출판한 것으로 이미 10만 권 가량 판매되었다. 또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역시 수종의 국역본이 출판 유통되고 있는데, 그 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세균 교수가 감수한 박종철 출판사 간, 『마르크스 앵겔스 선집』(전6권)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검찰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번역 출판한 '공산주의 사상'의 원전인 『자본론』과 『공산당선언』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후술하듯이 북한과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타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마르크스주의 해설서를 번역 출판한 '힘없는' 영세 출판사 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한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처사가 얼마나 비겁하고 악랄한지를 보여 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토니 클리프, 크리스 하먼, 던컨 헬러스, 존 몰리뉴 등 문제가 된 도서의 저자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지지하며 또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이란 대의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 그 정치적 함축으로 포함된 내용의 도서를 출판했다고 해서 이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금 검찰처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도서의 출판 유통을 봉쇄하는 행위야말로 역설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89~91년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를 자칭한 나라들의 정치

체제가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체제경쟁에서 패배하고 만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 체제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부재였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가 이른바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고도의 장기호황,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선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체제 외부에서는, 소련 동유럽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그리고 체제 내부에서는 공산당, 사회민주당, 노동당과 노동운동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이에 따른 자기반성과 발전의 자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회체제는 그 체제에 대한 도전과 비판 및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발전해 왔으며 그와 같은 도전과 비판이 봉쇄되거나 부재 할 때 그 사회체제의 쇠퇴가 시작되었음을 세계사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 다음 주로 마르크스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해설한 위 9종의 도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마르크스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주장이다.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기는커녕,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완전한 생취와 발전을 옹호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물론 소련, 북한 등 현존 사회주의 체제(스탈린주의 체제)의 지배계급(노멘클라투라)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자신들의 일당독재를 변호하는 논리로 왜곡 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이 원래 지향했던 것은 소련 북한과 같은 스탈린주의 체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왕국', 인간해방 세계의 건설이다.

위 9종의 도서들의 저자들인 토니 클리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 하먼, 던컨 헬러스, 존 몰리뉴 등은 모두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쿠바와 같은 현존 사회주의 체제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회주의와는 정반대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의 일종인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규정하는 국제사회주의 계열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위 9종의 도서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상으로서 마르크스 자신의 사상을 복원하고, 스탈린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토니 클리프는 『소련 국가자본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할 스탈린주의 체제는 마르크스가 의미했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주장하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노동자 자기해방'의 이론과 실천으로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제시한 마르크스 자신의 저작 그리고 이를 해설한 캘리니코스의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비롯한 위 9종의 도서는 검찰이 주장하듯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는커녕 정반대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위 9종의 도서는 소련이나 북한을 일종의 '이상향' 혹은 모델로 설정했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무수하게 출판되어 아직 유통되고 있는 수백 종의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도서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클리프와 캘리니코스를 비롯한 위 9종의 도서의 저자들은 물론 마르크스주의 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 혹은 한국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북한도 미국, 한국 등과 똑같은 자본주의 체제이므로 마찬가지로 타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북한 등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체제는 미국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체제 혹은 '덜 나쁜' 체제 (the lesser evil)가 아니라 더 진보적이지도 덜 나쁘지도 않은, '똑같이 나쁜' 체제라는 것이 이들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트로츠키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이들은 실제로 북한 노동자계급에 대해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타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지배계급과 같은 이적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 (매일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관영 TV의 국내청취의 허용이 검토되는 오늘 상황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 '적국', '이적단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의 축결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 들여야 할 사람은 북한 지배계급의 전복과 타도를 주장하고 있는 위 9종의 도서를

출판 한 출판사 사장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전복을 '선전 선동'하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그 출판사 사장을 투옥한 검찰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조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 사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과 사상들에게도 발언권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도서와 사람들에 대해 진시황제의 분서갱유 식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나라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위 9종의 도서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분석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우선 위 도서들은 물론 저자들의 독특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조야한 선전 선동 팜플렛이 아니라 고급의 학술도서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는 위 9종 도서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사실 위 9종 도서는 사회과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수월하게 읽히지 않는 어려운 책들이다. 따라서 이 도서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학계에서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감하게도 그 결과가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이 도서들에 대해 내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전문연구자(본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주제로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관련 논문 수십 편을 발표하고 그 중 2편은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되었다)인 본인의 지식 범위에서 볼 때, 검찰의 위 9종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판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위 9종의 도서 중 5번, 4번, 2번, 9번 도서는 각각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루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평전, 일종의 전기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도서들로부터 몇 군데씩 인용 나열한 다음 각각의 도서에 대해 각각 서너 줄로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우선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을 해설

한 5번 도서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레닌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4번 도서에 대해서는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혁명투쟁 경험을 서술하면서 스탈린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정통 맑스주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며 맑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 특히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실천투쟁 경험은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등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식을 고취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또 트로츠키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2번 도서에 대해서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학설에 따라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및 공산당의 임무를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로자 루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9번 도서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급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이와 같은 서너 줄 짜리 검찰의 판정은 한 마디로 '장님 코끼리 더듬기'식의 '대충 때려잡기'식 판정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아무 근거 없는 선입견과 악의적 예단에 입각한 것이다. 예컨대 검찰은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도서 5번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도서의 기본 줄거리와 동떨어진 판정을 하고, 트로츠키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도서 2번에 대한 판정, 즉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학설에 따라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및 공산당의 임무를 주장하는 내용"에 트로츠키라는 이름 자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로자 루셈부르크의 전기인 9번 도서에 대한 판정, 즉 "노동자 계급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에도 로자 루셈부르크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검찰이 과연 이 도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의심케 한다.

문제가 된 도서들의 내용 및 맑스주의의 역사에 대한 검찰의 무지는 레닌의 평전인 4번 도서에 대한 판정, 즉 "레닌의 당 전설 이론과 혁명투쟁 경험

을 서술하면서 스탈린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정통 맑스주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며 맑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 특히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실천투쟁 결합은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등 사회주의 혁명투쟁 의식을 고려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판정과, 트로츠키의 맑스주의를 검토한 2번 도서에 대한 판정, 즉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학설에 따라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및 공산당의 임무를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판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판정에서 검찰은 이 도서들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도서들의 기본 취지를 검찰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닌과 트로츠키의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4번 및 2번 도서를 포함하여 마르크스와 로자 루셈부르크의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5번과 9번 도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동안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루셈부르크 사상에 대한 해설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즉 검찰의 주장처럼 이 도서들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옹호하고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및 로자 루셈부르크의 해석을 비판하고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및 로자 루셈부르크의 원래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 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상술했듯이 도서들의 저자들은 스탈린주의라고도 말해지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원래 마르크스의 사상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소련과 북한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여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즉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이 도서의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것 같다. 뻘개이는 모두 한통속으로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매카시즘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눈에는 이 저자들이 풍부한 객관적 자료를 동원하여 증명한 마르크스의 사상과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명백한 결정적 차이 (이 도서들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트로츠키는 원래 마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이에는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검찰은 위 전기류의 도서들 5번, 4번, 2번, 9번의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판정을 내린 근거로서 각 도서들에서 서너 군데 문장을 발췌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이 전기들의 저자 자신의 문장이 아니라 전기에서 다루어진 인물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록셈부르크의 문장이다. 예컨대 검찰은 2번 도서, 즉 던컨 헬러스가 쓴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에서 4군데 문장을 인용한 다음 이 도서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4개 문장 중 3개 문장이 그 도서의 저자인 던컨 헬러스가 쓴 문장이 아니라 던컨 헬러스가 인용한 다른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글이다!!! 즉 검찰이 이른바 '증거'라고 제시한 두 번째 문장, 즉 "일단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사회주의로 재편되기만 하면, 이것은 절반 정도 문명화한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승리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소장 5페이지)"라는 부분은 도서의 저자 던컨 헬러스의 문장이 아니라 그가 인용한 엥겔스의 문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즉 "공산당의 임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도하는 것이다....노동계급이 공동전선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공소장 5~6페이지)는 문장 역시 도서의 저자 던컨 헬러스의 문장이 아니라 그가 인용한 트로츠키의 문장이다. 네 번째 문장, 즉 "계급은 그 자체로서만 보자면 착취의 재료일 따름이다....그것은 틀린 견해일 뿐 아니라 반동적인 견해이기도 하다"는 문장 역시 던컨 헬러스의 글이 아니라 그가 인용한 트로츠키의 문장이다.

어떤 도서이든지 그 도서의 취지에 대한 평가는 그 도서에서 인용된 문헌이 아니라 그 문헌에 대한 해석, 즉 그 도서의 저자 자신의 문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독서법 내지 평론의 상식인데, 검찰은 이 독서법의 ABC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 같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의 문장을 인용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마르크스주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문헌을 인용한 이미 출간되어 있는 천 여 종의 마르크스

주의 관련 문헌들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연구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학문과 사상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다.

그 다음 9종의 도서 가운데 1번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과 3번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의 역사』, 그리고 8번 『마르크스주의와 당』은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인, 국제사회주의 계열의 트로츠키주의 입장에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도서들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도서들에 대해서도 각각 몇 군데씩 인용 나열한 후 각각 서너 줄로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우선 1번 도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이 사회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찬양 선동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3번 도서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의 역사』에 대해서는 "트로츠키 노선에 입각하여 1919년부터 1943년 동안의 코민테른 운동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동자권력, 반제국주의로 대변되는 국제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등 현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8번 도서 『마르크스주의와 당』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정당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했다.

우선 1번 도서의 기본취지는 우리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알고 있는 소련 북한류의 스탈린주의가 저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부정한 것임을 증명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전통은 마르크스에서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마르크스 사상을 "찬양 선동"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의 확립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의 역사를 다룬 3번 도서는 검찰의 판정처럼 "트로츠키 노선에 입각하여 1919년부터 1943년 동안의 코민테른 운동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검찰 자신이 이 도서가 코민테른 운

동사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즉 검찰은 이 코민테른 운동사, 즉 국제공산주의 운동사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도서라고 스스로 인정한 도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저촉했다고 기소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당』이라는 제목의 8번 도서는 마르크스와 레닌, 로자 루셈부르크, 트로츠키 및 그람시의 당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당 개념을 비판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검찰이 판정한 것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정당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은 위 마르크스주의 역사를 다른 도서들(1번, 3번, 8번)의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판정을 내린 근거로서 각 도서들에서 '문제'의 문장들을 발췌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다른 저자 자신의 문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문장이다. 예컨대 8번 도서, 즉 존 몰리뉴가 쓴 『마르크스주의와 당』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정한 증거를 살펴보자. 검찰은 그와 같은 판정의 근거로 그 도서에서 8군데 문장을 인용 나열했는데, 그 중 절반 즉 4군데 문장은 그 도서의 저자인 존 몰리뉴가 쓴 문장이 아니고 그가 인용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문장이다. 즉 검찰이 '증거'라고 제시한 세 번째 문장,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의 학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공소장 35페이지)는 저자인 몰리뉴의 문장이 아니라 그가 인용한 마르크스의 문장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 즉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노동자들이 모든 종류의 폭정 진정한 계급의식일 수 없다" (공소장 36페이지) 역시 몰리뉴의 문장이 아니라 레닌의 문장이며, 다섯 번째 문장, 즉 "전반적인 현 세계 정세의 주 특징은 프롤레타리아트 지도력의 역사적 위기이다. 혁명적 지도력의 위기로 귀착되고 있다"(공소장 36~7페이지)와 여섯 번째 문장, 즉 "다음 시기에 수행해야 할 전략적 과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공소장 37페이지) 역시 저자 몰리뉴의 문장이 아니라 그가

인용한 트로츠키의 문장이다.

여기에서 검찰은 이미 언급한 독서법의 ABC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독서법의 ABC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해서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공안검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인이 강조하는 것은 독서법의 ABC에 무지한 사람이 쓴 독후감이나 서평 같은 것은 적어도 인신의 구속을 결파시키는 엄중한 형법적 판결의 자료로 채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다음 6번 도서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소련에서 스탈린주의 체제의 성립과 특징을 서술한 소련경제사의 고전적 저작의 하나이며, 7번 도서,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는 저자인 크리스 하먼이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마르크스주의 즉 '반마르크스-레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명제들을 해설한 도서이다. 그런데 검찰은 6번 도서 『소련 국가자본주의』에서 9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칼 마르크스에서 기원된 공산주의 자체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동에 의해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라고 전혀 내용과 동떨어진 판정을 내렸다.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1947년에 출판된 책으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1930년대 소련 경제의 성격을 이론적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극단적인 공산주의" 체제라고 알려진 스탈린주의 체제,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사주한 소련 체제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그 체제가 타도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토니 클리프를 비롯하여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도서들의 저자들 같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와 공산주의의 타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과거 소련공산당은 물론이고, 중국공산당,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미국과 일본, 영국의 공산당, 또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과 같은

이른바 '유로코뮤니즘'으로부터도, 즉 세계에서 이른바 '정통 공산주의'를 자처하는 모든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불구대천의 골수 반동', '반공주의' 심지어 '미제국주의의 스파이'라고 규탄되고 테러 위협을 받아 왔다. (트로츠키 자신이 스탈린의 직접 지령에 의해 1940년 망명지인 멕시코에서 살해되었다)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세력으로부터 '반공주의', '미제국주의의 스파이'로 탄압 받고 있는 트로츠키주의자의 저작에 대해 "진정한 공산주의" 서적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이 나라 검찰이야말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세력과 공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침을 시주한 스탈린주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주장을 하는 토니 클리프의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검찰이야말로 북한, 소련과 같은 '이적단체'를 이름내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또 7번 도서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에서, 8군데를 인용 나열한 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계급투쟁과 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노동가치이론, 사회주의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 활동가들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판정을 내렸다.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는 검찰의 주장처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 활동가들의 지침서" 용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노동 활동가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진지한 사회과학 이론서를 읽고 이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노동자들은 그저 공장과 사무실에서 쉴 틈 없이 일하다가 퇴근해서는 TV보고 소주 마시고 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컨대 본인은 위 9종 도서에 대한 검찰의 '이적표현물' 판정이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한 판정을 근거로 하여 위 9종 도서를 출판 유통한 출판사 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관련된 해외뉴스 하나를 전하는 것으로 이 의견서를 마무리짓겠다. 지난 10월 1일 영국국영방송(BBC)은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000년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사상가를 뽑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BC의 발표에 따르면 막스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을 큰 표 차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즉 21세기를 목전에 둔 전 세계 인류는 다름 아닌 막스를 지난 1000년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류 최고의 사상가로 선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막스의 사상을 해설한 도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도서들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번씩이나 연달아 투옥하고 있는 이 나라 역사의 시계는 도대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변론요지서

사건 99고단6970

피고인 홍교선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이 199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서점을 통하여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 『레닌 1』,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와 당』, 『로자 룩셈부르크』 등을 판매하고 소지하였으며,

나. 1999년 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등지에서 《노동자 연대》, 《사회주의 노동자》, 《우리의 사상은 21세기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등의 유인물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입니다.

2. 제1, 가항의 표현물들을 판매,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판매,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에 대한 설명

(1) 피고인의 표현물 판매, 소지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위반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표현물들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이 책을 유통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 검찰의 표현대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이와 같은 마르크스 사상을 해설한 책들이 수십 종 출판, 유통되고 있으며 국립 중앙도서관에 벼짓이 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굳이 피고인이 출판한 책만 문제삼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전적으로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검찰은 마르크스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해설한 위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탈린주의 체제나 북한,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당 독재를 변호하는 논리로 사회주의가 왜곡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표현물들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상은, 소수의 음모적 집단이 혁명의 이름 아래에 국민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일당독재에 반대하며, 혁명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혁명 후에 소수의 집단이 국민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트로츠키주의'라고 부르는데, 1917년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던 트로츠키가 스탈린파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고 외국으로 망명한 이후 스탈린이 소련에서 펼치던 가혹 통치를 비판하면서 정리한 사상입니다.

위 표현물들의 저자들인 토니 클리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 하먼, 던컨 헬러스, 존 몰리뉴 등은 모두 이러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인데,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상으로서 마르크스 자신의 사상을 복원하고, 스탈린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구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구 소련식 사회주의를 스탈린주의라고 하면서 관료주의에 기반해 인민을 억압하는 억압적인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4) 검찰은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에 대해서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학설에 따라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및 공산당의 임무를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하였고,

《레닌 1》에 대해서는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혁명투쟁 경험을 서

술하면서 스탈린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정통 맑스주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며 맑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 특히 레닌의 당 건설 이론과 실천투쟁경험은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등 사회주의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하였으며,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하였고, 『로자 루셈부르크』는 '노동자 계급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찰은 위 표현물들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위 표현물들의 기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닌, 트로츠키, 마르크스, 로자 루셈부르크의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 표현물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동안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루셈부르크 사상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비판하고 원래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줄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서(증제 1호)에서도 기재된 바와 같이 검찰들이 위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문구들이 저자 자신의 문장이 아니라 전기에서 다루어진 인물들 즉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루셈부르크의 문장들입니다.

(5) 그리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이란 책은 우리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알고 있는 소련 북한류의 스탈린주의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부정한 것임을 증명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전통이 마르크스에서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마르크스 사상을 '찬양·선동'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는 검찰의 판정처럼 '트로츠키 노선에 입각하여 1919년부터 1943년 동안의 코민테른 운동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검찰 자신도 위 책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사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당』은 마르크스와 레닌, 로자 루셈부르크, 트로츠키 및 그람시의 당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당 개념을 비판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정당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6)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소련에서 스탈린주의 체제의 성립과 특징을 서술한 소련경제사의 고전적 저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 책이 '칼 마르크스에서 기원된 공산주의 자체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책은 1947년에 출판된 책으로 1930년대 소련 경제의 성격을 이론적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극단적인 공산주의'체제라고 알려진 스탈린주의 체제,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사주한 소련 체제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그 체제가 타도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 책입니다.

(7)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는 동성애가 억압받는 원인이 천부적인 도덕률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도덕률과 종교적 배경이 정치 사회적 목적에 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동성애자 억압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부터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한 물적 토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 그리고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는 동성애가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거나 그것이 '도착'이니 '변태'니 하는 요즘의 관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무엇이 동성애를 억압했는지, 특히 사회주의 운동과 동성애자 해방운동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위 표현물들은 역사적으로 탄압받는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실제적 인권 신장과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 무엇보다도 위 표현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구소련이나 북한, 중국 등의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판에 똑같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 구소련 사회를 자본주의의 변종인 국가자본주의사회라고 보고,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현물들 속에서 비판하는 '자본주의'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자본주의 국가 이외에도 북한, 중국, 구소련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혁명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역시 북한, 중국, 구소련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표현물들에 드러난 사상은 매우 특이한 것이고 이 사상은 결국 현재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이고 그에 따라 모든 국가가 혁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표현물들에 표현된 사상은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특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북한의 주체사상이 권력획득을 위해서라면 음모적인 쿠데타나 무장봉기도 마다하지 않는 반면에, 위 표현물들에서는 그러한 음모적인 쿠데타나 무장봉기에 대해 반대하고 '대중의 자발성'과 '대중으로부터의 동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자발성'

과 '대중으로부터의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상이 최소한 음모적인 무장봉기 등에 의해 국가권력을 전복하려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해석

(1)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열거한 표현물을 판매,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해석

(가)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 B규약)—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위 국제인권규약은 비준국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국제협약으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국제시민으로서 기본권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제19조에서 인간은 누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서면이나 인쇄물, 예술품의 형식 또는 기타 자기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수리하고 전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http://www.unhchr.ch/html/menu3/b/a_udhr.htm)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국제인권규약의 '핵심적인 권리'로 규정했고 표현의 자유는 '가장 우선적인 자유이고 자유의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자유 중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자유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위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역시 국내에서도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위 국제인권B규약도 표현의 자유가 늘 완벽히 보장받는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위한 선전'이나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차별과 호전성,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제인권B규약 제19,20조). 그런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우호적으로 수용되거나, 모욕적이지 않거나, 무관심한 정보나 사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 논리에 따라 '모욕적이고 충격적이고 국가나 사회일부의 평온을 해치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용되는 것이 진리를 판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예의 항목을 설정했는데 1) 타인의 권리나 명예, 2) 국가 안보, 3) 공중질서, 4) 공중의 건강, 5) 공중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 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

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고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은 때'이고 이때의 법적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라) 그리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1999년 1월 초순 경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하여 유엔인권B규약 제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유사한 위반 사례 재발 방지와 금전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할 것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4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 장만수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특히 표현의 자유 분야 등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최근 정부는 국가보안법 조항 중 가장 악용의 소지가 있어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해석

(가)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법 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았고 법 운영 당국이 '사람에 따라서는 법규의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여 기본

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운영 당국은 가능한 축소 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처벌을 면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부 비판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오용 내지는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고 이러한 자의적 법 집행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유보하고 대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지켜줄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라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6. 25. 90헌가11)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1년 5월 31일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대한 1996년 10월 4일 95헌가2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 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라고 해석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

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1995년 1월 1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별첨 부산지방법원 1995. 1. 17. 94고합 1325 위헌제청신청 참조).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위 95헌가2 결정을 통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의 해석을 함에 있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상 위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각 행위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물 판매, 소지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소한 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2) 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물들은 우리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북한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위 표현물들은 북한사회에 대해서 일부의 관료들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적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위 표현물들은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다수 국민들의 동의없이 쿠데타나 무장봉기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권력을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물들에서 표현된 사상은 유토피아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진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유토피아적 상상력 때문에 현실사회 내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사상입니다.

(4) 과거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그러한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무장봉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표현물들 속에 나타난 사상은 음모적인 무장봉기 등의 형태에 의한 혁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그리고 이 사건의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입증됩니다.

첫째, 이 사건 표현물들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를 제외한 10권이 책이 모두 보관되어 있고(증제2호증), 국회도서관에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 『레닌 1』,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와 당』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책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접근하도록 하면서, 위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여 위 책들의 출판사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관된 기준이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남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위 표현물들은 이미 서울대학교 등의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서 등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회과학대학에서 참고 도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참고자료 참조). 이는 위 표현물들이 단지 사회주의 사상을 선동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고급 학술도서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술 연구도서에서 멀대로 문제가 된 문구를 발췌한 다음 그 책의 내용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획책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판정하고 출판 유통시킨 출판사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트로츠키주의'라는 사상의 한 분야에 대하여 접근을 사전에 못하게 하고 국민이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되며, 결국 국민에게 인정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의 저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1999년 9월 경 방한하여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자신의 사상을 강연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참조). 이렇게 저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대학교에서 강연할 수 있는 반면 그 사람의 책을 출판한 출판인이 이적표현을 판매로 국가보안법의 재판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범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및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검토

- (1)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입니다. 그 구성요건을 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문서·도면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이처럼 단순히 표현물을 판매,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상, 주관적 구성요건인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표현물을 판매, 소지하고 읽을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말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1957년 *Yates vs US* 판결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제2차대전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매카시즘이 활개를 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Smith법(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통상적으로 스미스법이라고 칭하지만, 정식 명칭은 파괴활동방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입니다.)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법 제2조는 "합중국의 주, 연방정부를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는 것이 의무이고 필요하고 희망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타당하다고 교육·선동하는 행위, 위의 이론을 교육·선동·장려하는 자들의 협회·단체·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돋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Yates등 14인은 바로 스미스법 제2조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특히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하는 의무와 그 필요성을 선동하고 교육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Yates vs US* 판결에서 스미스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스미스법은 강제적인 국가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학습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행동이 없는 사상의 선동과 학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폭력혁명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advocacy directed at promoting unlawful action)과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advocacy of abstract doctrine)은 구별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은 불특정자의 '혁명적' 내지 '폭력적'인 행동을 모호하게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종류의 선동은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하에서 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 (4) 위와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Yates vs US*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란 "불법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전·선동", "즉각적인 폭력행사를 주장하는 선전·선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매,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의 내용을 보면, 트로츠키주의의 이론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전·선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표현물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고, 혁명과정에서 폭력이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원리의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고, 폭력혁명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피고인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전·선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전·선동”이란 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무장봉기 등을 주장한다든지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트로츠키주의 이론이 담긴 표현물을 판매, 소지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Yates vs US*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해석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상은 사상의 자유공동시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할 것이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간의 경쟁이 자유롭게 보장될 때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을 담은 표현물을 판매,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사상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하게 되어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3. 《노동자 연대》 등을 취득,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피고인이 취득, 소지하였다는 책들은 모두 국제사회주의자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항을 정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조직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교부한 책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2)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은 앞에서 살펴본 트로츠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서유럽이나 중남미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나 존재하는 소수파 사상이 1990년대 들어서 한국에 급작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태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89년 6월 4일 중국 인민군의 탱크가 천안문 광장에 있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을 보고 구 사회주의권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된 일부 운동권 출신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 내지는 구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되었고 또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는 빈부격차 문제나 한국에 특유한 재벌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 못지 않게 북한 민중의 해방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로츠키주의 사상 자체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전혀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

으며 위 기관에서 나오는 출판물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신문과 소책자의 제작 및 배포, 정세토론, 노동단체 기타 단체의 집회참석이 주된 것으로서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데 명백한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들이 발간한 표현물 역시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설령 위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취득, 소지하였느냐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트로츠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발간한 책자를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민중대회나 다른 노동자 집회에서 다른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발간하는 팜플렛을 수집하고 공부했던 것처럼 대학교나 민중대회에서 가판을 설치하고 판매하던 국제사회주의자들 기관지를 구입하였던 것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까지 국가보안법위반행위라고 한다면 위 표현물을 구입한 피고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결국 이 나라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인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가. 공소장에 의하면 검찰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으나 모두사실에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1998년 11월 25일 구속되어 수사받았던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증거에 대한 의견'에서 위 수사자료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였는바, 1998년 11월 25일 구속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수사관들로부터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조직원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위 사실을 번복하였고, 1998년 11월 25일 구속되어 받은 재판에서도 위 서류들의 임의성을 부인하여 국제사회주의자들 가입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년 1월 26일 선고 98고합1370 판결).

5. 예비적 주장

가. 법률적 주장

(1)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2)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1999년 1월 16일 선고되고 확정된 1999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6년 11월부터 책갈피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표현물들을 판매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의 반복된 판매행위로 수입원을 삼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업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6년 11월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인 1999년 6월 9일까지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였으며 비록 1998년 11월 25일경 구속되고 1999년 1월 26일경 석방되어 일시 영업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석방 후 다시 판매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였고 달리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의 하나인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법 1985년 3월 27일 판결 84고단1685 참조).

(3) 한편,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로서,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년 5월 25일 선고 93도836판결).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로자 루셈부르크』, 『마르크스주의와 당』,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 『토르츠키 사상의 이해』,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레닌 1』,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소련 국가자본주의』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 소지하였다고 하는 책과 동일한 표현물을 취득, 제작, 판매,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년 1월 26일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년 4년 20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참고자료 참조). 그리고 위 판결은 1999년 4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5)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의 선고일인 1999년 4월 20일 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1999년 4월 20일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인의 정상관계

(1)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0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제일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9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도서출판 연구

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 위 연구사 바로 옆에 책갈피 출판사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같은 출판사인데다가 그곳에서 출판하는 책들의 내용이 다른 책들과 다르고 호기심이 생겨 출판사 사장 공소의 박순봉과 교분을 쌓으며 지냈고, 1996년 11월경 위 박순봉이 피고인에게 책갈피 출판사의 영업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위 연구사에 근무하면서 책갈피 출판 영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다가 책갈피 출판사의 책들이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사상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조직원으로 지목받게 되었고 1998년 11월 25일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그리고 피고인은 1999년 1월 2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보니 경찰에서 압수하지 않은 일부 책들(참고자료에 제출한 사진은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책을 다 압수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들입니다)과 피고인의 구속 후 일부 서점에서 반품된 책들이 출판사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5) 피고인은 석방 후 더 이상 책갈피 출판사 이름으로는 책을 출판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은 세상'이라는 출판사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등록까지 하였으며 출판 업무를 원활히 할 생각으로 위 박순봉과 책갈피 출판사의 거래 등으로 생긴 모든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를 작은 세상 출판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판사가 서점으로부터 책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판매대금이 쌓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출판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책갈피 출판사의 거래 관계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6) 이와 같이 피고인은 1999년 1월 26일 출소한 이후 지금까지 위 박순봉이 이미 제작하여 반품된 책들을 판매하였을 뿐 달리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제출한 '꿈 해몽법'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 맷음말

가.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에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예는 역사속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카톨릭의 종교재판에 의하여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모든 행위들이 야만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제는 문명국가에서 단지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든 이유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생겨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우리 체제의 가장 큰 적인 북한공산집단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는 상징적 위험성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가 한때에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사상을 가지고, 그와 같

은 사상이 표현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장기간 구금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간의 구금생활은 오히려 젊은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외곬수에 빠지게 하여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사상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젊은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유수의 사상가나 석학들 중에서 젊은 시절에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역사주의의 빈곤」과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쓴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칼 포퍼 조차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바보고, 30이 되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인 사람은 더욱 바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계 유수의 사상가들이 20대였을 때, 그 당시의 국가권력이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구금했다면, 이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도 마르크스주의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최근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에서 좌파정부가 들어선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인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다만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연하고 평화적인 길을 찾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그 문제의식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 정치사회의 주된 흐름의 하나이며, 피고인은 바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논증한 것처럼, 미국의 예이츠 판결(Yates vs. US)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고 할 때에 '선전·선동'이란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전·선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처럼 '추상적인 원리의 선전·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추상적

인·원리를 선전·선동'한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제5 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1. 『Constitutional Law』, Geoffrey R. Stone 외, 1065면부터 1067면까지
(국문 번역문 첨부)
1. Yates vs. US
1.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장호순, 개마고원, 1998, 107면부터 128까지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이상희

최 후 진술문 I

홍교선(1999년 4월 6일 양소심 최후진술)

제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당한 출판사 대표 및 노동자들과 소위 이적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의 사례를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번의 출판사 탄압과 수천 명의 구속자들을 보고 일일이 숫자를 세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의 모든 사회과학 서적을 내는 출판사들과 대표들, 그리고 주변에 친근하게 알고 지내던 출판사 직원들마저 출판 탄압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다시 한 번 이 나라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대 헌법은 모두 출판의 자유를 인정해 왔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출판의 자유를 허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 역시 마찬가지임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 죄의 사상을 확산시킨 원인으로 출판사들의 이적도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97년 10월엔 도서출판 이웃, 청년문예의 대표 및 편집자를 구속하고, 98년 4월에는 대동 출판사 대표, 11월에는 풀무질 출판사의 편집장과 책갈피 출판사의 저를 구속시킨 것은 아주 당연하며, 앞으로도 어떤 출판사나 서점이든지 사회과학 서적을 발간한다거나 책을 판매한다

면 구속시키겠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무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출판계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자성하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 이론이나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학, 정치학의 이론 서적이라 할 수 없는 것들로서 학문적 호기심이나 학문 연구의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고, 책의 내용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내용”이라고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심에서도 밝혔듯이 저희 출판사의 책들은 이미 10여 개 대학교에서 정교재 및 부교재로 쓰고 있으며 매년 신학기나 시험기간이며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광란의 자본주의』,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1』, 『소련 국가자본주의』 등을 레포트로 제출하고 있으며, 교수님들마저도 독보적인 이론서라며 인정을 하는 책들입니다.

이렇듯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며, 시내 유명 대형서점들에서 아무 문제 없이 팔리던 책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적표현물”로 둔갑하고 “국가변란” 선전 표현물로 둔갑하여 구속시킨다면 그 누구도 사회과학 책을 소지할 수 없을 것이고 학문 탐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재판부가 그러한 표현물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고시하여 어떤 책을 출판하거나 소지하면 국가보안법상의 유죄가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친북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한 일부 과격 학생들을 양성했으며,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은 한총련의 96년 연대 사태와 97년 한총련 출범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회주의 사상과 폭력 문제는 따로 제쳐두고서라도 96년 연대사태와 97년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시각부터 지적해야겠습니다.

96년 한총련은 이미 범민족대회 전에 통일원에 미리 집회 신고까지 해놓고 평화적인 집회를 치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통일대축전’ 행사를 마친 8월 16일, 학생들이 귀가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그 날부터 헬기 5대와 테러 진압 특수 경찰이 포함된 병력 1만 2천명을 투입하여 최루탄 3만 6천 발을 난사하고, 수해 지역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 군용 헬기가 13대나 동원되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매일 2만여 명에 이르는 전경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신촌 지역의 주민들은 “왜 전경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돌멩이를 던지는 건 안 나오나? 재네들은 폭도가 아니라 학생들이다. 똑바로 보도록 해라.”며 학생들에 대해서 방어를 했었고, 또한 8월 20일 진압을 취재한 MBC 보도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땅바닥에 굴리면서 연행해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폭력입니까?

또한 97년 한총련 이석 씨 치사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그가 프락치였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서 심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양심선언하게 만들거나 자술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한총련 출범식을 막기 위해 여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고 짜를 때려 여덟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히고, 교문을 쇠사슬로 걸쳤다가 막고 방패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찰 정보원들을 학교에 일상으로 침투시키는 정부의 반민주적 억압이 이석 씨를 죽음으로 만든 원인입니다.

한총련은 출범식 전부터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며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93년 한총련이 출범한 이후 96년까지 한총련은 출범식을 모두 평화적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던 한양대를 원천봉쇄하고, 원천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난사하고 학생

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학생들의 집회를 구경하던 이철용 씨는 백골단의 구타로 얼굴이 끓개지고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정부는 마치 한총련 사수대가 테러집단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었지만 한총련 사수대는 원천봉쇄와 경찰 폭력으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방어한 것뿐입니다.

올해도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의원이나 지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한총련 출범식 자체를 막겠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이며,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 자치조직입니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전국의 대학생은 전부 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란 얘기입니까? 한총련 지도부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지도부를 선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언론은 한총련 학생들을 “폭력 실인 집단”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날마다 산업재해로 7~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96년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연세대생 노수석 씨는 안으로 피멍이 들도록 특수 제작된 진압봉에 맞아 숨졌고, 철거에 항의하던 신연숙 씨는 김영삼 정부가 보낸 철거 강제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96년에는 경찰 폭행에 의해 죽은 이덕인 씨에 이어 노점상 민병일 씨가 살해되었고, 심지어는 경찰 폭력으로 숨진 류재을 씨의 장례식 운구 행렬까지 막은 것이야말로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은미 씨는 허리 디스크와 자궁 하수증을 앓고 있어,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허리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범의 재판부가 한 달이 넘도록 시간만 절질 끄는 행위에서 누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폭력은 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59억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40개국의 8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 상태이며, 이중 1년에 1천 2백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이윤 때문에 남아도는 쌀을 태평양 한 가운데 버리면서 기아 문제는 기상악화와 사막화 등 자연재해와 인구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평계를 덍니다.

하지만 1984년(15년 전 조차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적 서방의 영농 기업을 이용하면 세계는 현재 인구의 7배인 33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업자 수는 98년 말 2천만 명에 육박하고, 한국에선 실업자수가 정부의 공식통계로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00만 명이 실업상태이고 150만 명의 아주 노동자들이 추방에 직면할 것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수준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연간 1인당 소득이 1,200달러에서 3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산업 도시인 수라바야에서는 최저 일당이 1년 전 2달러에서 30센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쌀과 밀가루 가격이 95년 2월에 47%나 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태국에서의 위기는 수천의 농가구에서 방콕의 매춘가에 땅을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구제 활동가들은 어머니들이 3배나 오른 우유를 살 수 없어 아기들에게 차를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력에, 자신들의 생활을 방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강력대처하고, 노학연대”와 실업자 조직을 이용한 과업행위도 처벌”(<한겨레> 99년 3월 22일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시켜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안보와 무관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

겠다"(<한겨레> 99년 3월 22일자)고 하는데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평계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에는 궁색해지자 진짜 목표—예컨대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정치인들과 언론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폭력적"이라고 매도하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폭력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행한다는 이름으로 감추고자 합니다.

말이 옆으로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국가보안법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1년이 되던 시점에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입니다.(민가협)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구속된 양심수 188명과 비교해 볼 때 4배가 넘습니다. 또한 2월 25일에 있었던 특별사면자 및 만기출소자를 감안해도 3월 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2백 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가보안법은 153명으로 74.3%에 달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는 과연 '북한' 때문인지 저는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안기부 차장 정형근은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준동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와 발본색원이라 할 것이다. (<WIN> 97년 10월호)"

또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국제사면위원회 피에르 사네와의 면담에서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사네는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IMF체제에서 대량해고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 잇따를 것이고,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 참가자들도 체포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 5월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에서도 합법적인 집회 신고 승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최루탄과 전경을 앞세워 공격했던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노학연대에도 북한을 평계로 대면서 한총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머리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행동과 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단지 생각만 할 뿐 말이나 글로 표현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상의 자유입니까?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상 형성의 자유에는 모든 문헌과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금지'된 서적이나 '유인물' 등을 소지하거나 '탐독'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적은 그 내용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던 간에 출판이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개방해 놓고 공개적인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서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학문을 담은 출판물이 강제력에 의해 금지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책은 권력의 어떤 탄압으로부터도 대중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넌 누구편이냐?"며 인간의 의식을 둘로 갈라 선택을 강요하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단지 비민주적 악법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인 악법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중에 바스티유 감옥과 함께 없어졌어야 했으나, 제정 러시아에서도,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도, 스탈린주의 러시아에서도, 일제 치하 조선에서도 (치안유지법), 이후 대한민국에도, 북한에서도(형법) 살아남아,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선언은 이제부터라도 공문구가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18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19조)"

이상입니다.

1999년 4월 6일 홍교선

최후진술문 II

홍교선(1999년 11월 16일 양소심 최후진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출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역대 헌법은 모두 출판의 자유를 인정해 왔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출판의 자유를 허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인권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정부 역시 마찬가지임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 이론이나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학, 정치학의 이론서적이라 할 수 없는 것들로서 학문적 호기심이나 학문 연구의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고, 책의 내용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매·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들이 "명백하게 혐존하는 위험"을 가

져다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책을 읽음으로써 현 사회를 위태롭게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현 자본주의 체제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올바른 사회분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무엇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로자 룩셈부르크』, 『소련 국가자본주의』,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같은 책들은 이미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10여 개 대학교에서 정교재·부교재로 사용하고 레포트를 제출하고 강의를 했던 책들입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저희 책이 출판했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에서 책을 소개하는 <서평>이 나왔는데, "적을 이름계"한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 <서평>이 실린 자료는 경찰이 압수해 갔습니다. — 또한, 서울시내 유명 대형 서점들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종로서적, 을지서적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서점에 대해서도 검찰의 말대로라면 이적표현물 배포죄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은 책이 출판되더라도 "제가 출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다른 사람이 출판하면 학술 연구가 목적이다"라는 검찰과 경찰의 답변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같은 행위를 가지고 어떤 이는 처벌되고 어떤 이는 처벌되지 않는 이러한 기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혹 검사는 "책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적의도'에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즉, 같은 책이라도 제가 팔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팔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판매한다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구조 말입니다.

이렇듯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이적표현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

을 출판하는 사람의 의식을 문제삼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너의 사상이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이적표현물 판매·소지로 구속시킨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출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지만, 네가 팔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솔직하고 자연스럽습니까?

분명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과학·정치서들이 나와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이적표현물이라고 낙인 찍혀 있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96년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위반 혐의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손쉽게 이적표현물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는 수업교재든 학술서든 간에 책을 단지 소지하기만 해도 '이적의도'를 가졌다는 검찰의 단 한마디면 언제든지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머리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행동과 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말고 사회질서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만 할 뿐 말이나 글로 표현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상의 자유입니까?

진정한 사상 형성의 자유에는 모든 문헌과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금지'된 서적이나 '유인물' 등을 소지하였거나 탐독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적은 그 내용이 어떠한 사상을 담고 있던 간에 출판이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 "폭력이다, 빨갱이다"하면서 마녀사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개방해 놓고 공개적인,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서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출판의 목적은 "...그 책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다른 사람과의 폭넓은 의사 소통과 사회적 담론의 자연스러운 형성에 있는 것"(《생각의 나무》, 박광성 사장)처럼, 이적표현물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저희 출판사의 책들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미국·오스트레일리아·남아공 등등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합법적으로 읽히고 있으며 사회 분야를 탐구하는 도서로서 정평이 나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논의가 되기는커녕 책을 펴놓고 볼 수도 없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입니다.

혹, 그것이 서구와 달리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책의 주된 맥락은 북한을 친양·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오히려 소위 '사회주의'국가라는 곳에서 탄압을 받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선불리 견드려 자칫 친북 활동의 공간을 넓혀주면 나라가 결딴난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닌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므로 약간의, 아주 약간의 기본권의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돼 왔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국가보안법 7조를 '국가안보'가 아닌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 장치로 사용해 왔는데, 실제 5공화국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천 2백 32명이고, 이 가운데 7조가 적용된 이는 2천 72명으로 전체의 92.8 퍼센트이고,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와 98년 국가보안법 구속자 4백 13명 중 7조 위반 혐의를 받은 이는 3백 81명으로 전체의 92.2 퍼센트입니다.

전 안기부 차장이자 한나라당 의원이자 민주 인사들에 대해 고문을 자행했던 정형근은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

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준동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와 발본색원이라 할 것이다."(<win> 97년 10월호)고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고, 또한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제사면위원회 피에르 사네와의 면담에서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사네는 <한겨례 21>과의 인터뷰에서 "IMF 체제에서 대량해고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 잇따를 것이고, 불법으로 규정된 과업 참가자들도 체포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과 활동, 나아가선 민주주의와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주로 악용돼 왔습니다. 심지어 노근리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얘기를 꺼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근리 사건을 들먹이다가는 즉각 사상범으로 몰리는 분위기 였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조선일보 10월 2일자)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가보안법의 구속자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은 95년 보고서에서 "국제 인권 단체나 유엔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은 의사표현·사상·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인권보고서>도 "국가보안법이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비롯한 여러 인권을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제7조)친양·고무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불고지죄는 적절치 못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민회의 유선호 인권위원장은 "국보법 제7조(친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죄)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폐지 또는 적용 대상축소가 절실하다."(<한겨례> 9월 29일자)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북한보고 가족을 고발하는 것을 보고 반인륜적이라며 비난해 오던 터에 불고지죄의 폐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제7조(친양·고무 등)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얹압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던 독소조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구속자를 양산해온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개정이 아니라 계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된 '이적'이나 '국가변란'의 개념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어 각종 조직사건이나 간첩단 사건을 언제든지 만들어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도 국보법 구속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국보법 개폐에 진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8·15사면에서 정부는, 김현철씨에게는 '잔형집행면제'라는 사면으로 풀려나고 있을 때, 양심수들은 '가석방', '형집행정지'라는 죽음을 차고 풀려났으며, 게다가 정치수배자들에게는 준법서약서다, 한총련 탈퇴서다 하면서 사상 전향을 앞세워 사실상 수배해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 10일 김대중 정부가 사면 폭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KBS노조 위원장과 방송노조 간부들이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최근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미 8·15사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민주노총은 8·15사면에 기만당한 직후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인권, 더 이상의 개혁은 없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파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올 가을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11월 노동자 대회를 즈음해 총파업도 구상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김영환·조유식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해, '공안'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파장은 진보진영에까지 촉수를 뻗쳐 간첩단 사건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공안단압'과 '노동자 투쟁', 이 두 가지 그림의 공존은 아주 익숙한 패턴입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라는 적을 평계로 '내부의 적'을 단속하는, 정권유지차원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은 열 번을 개정해도 악법이고, 백 번을 개정해도 악법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일 뿐

이니, 이러한 폭력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자들의 국보법 철폐투쟁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정치·사상·언론·출판·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과 사상을 담은 출판물이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강제력에 의해 금지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순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책은 권력의 어떤 탄압으로부터도 굴복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압은 오히려 사상·출판·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대중들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면, 지금까지 펼쳐져 왔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상과 출판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검찰의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민과 일반 독자가 내릴 수 있음을, 더 이상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에도 보장된 사상·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단지 '이적의도'라는 불분명한 잣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재판장님을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16일

홍교선

성 명 서

수신 : 서울 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

홍교선 씨는 작년 11월 26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올해 1월 26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개월 만인 지난 6월 9일 또 다시 구속되었다.

홍교선 씨의 구속은 입만 열면 인권을 떠드는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언론·출판의 기본적인 자유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책갈피 대표 홍교선 씨가 두 번이나 구속된 이유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등의 책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적용해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은 대학 교재로도 쓰이는 책이다.

법원·검찰이 책갈피 출판 서적들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책갈피 대표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도 명확히 보장되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서울 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 재판부에 홍교선 씨의 무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책갈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홍교선 씨를 즉각 석방하라!

둘째, 인문 사회과학 서적을 비롯한 출판물에 대한 이적 표현물 규정 철회하라!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결코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내외 인권 단체들과 연대해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계

가유현(부천시흥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승규(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영삼(보건의료노동조합 조직국장), 강용구(부천시흥 민주노총 조직부장), 강정호(금호타이어노동조합 사무장), 강준희(천지노동조합 사무장), 강중묵(MBC노동조합 부위원장), 강한규(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고영주(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곽홍민(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지회장), 구권서(동우공영노동조합 위원장), 권근섭(한일이화노동조합 위원장), 권근호(기아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권미경(성남 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석주(효성창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권혁문(현대정공노동조합 쟁의부장), 기형호(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 김강영(현대자동차 남양부지부장), 김경주(축협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광태(서울장애인 노동조합(준) 대외국장), 김기호(유성기업노동조합 사무장), 김도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회장), 김명숙(대하합섬노동조합 쟁의2부장), 김문권(한국중공업노동조합 법규부장), 김미경(조홍은행노동조합 교육부장), 김배진(진로코어스맥주노동조합 대의원), 김범진(동부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병웅(건설노동조합연맹 전산), 김석필(고려운수노동조합 문체부장), 김성근(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조직차장), 김성일(현대정공노동조합 산업안전위

원), 김성철(효성창원노동조합 조직부장), 김수달(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지부장), 김수영(경기광주지역 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양진(축협중앙회 분회장), 김억만(효성노동조합 쟁의부장), 김영대(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억(축협중앙회 여성부장), 김영준(의료보험노동조합 경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용구(진안섬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용식(현대중공업노동조합 분소장), 김용주(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김은선(힐튼노동조합 사무차장), 김재호(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총무부장), 김정호(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김종렬(서울상용직노동조합 성북지부장), 김종수(서울상용직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종환(효성노동조합 여성부장), 김지호(삼신생명노동조합 문화부장), 김진일(성남지역 방송노조 부위원장), 김창도(전국생보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창섭(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쟁의국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김학철(동우공영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김한상(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해석(경주힐튼노동조합 부지부장), 김해섭(오리온전기사무기술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형근(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형필(동양화재지부 부위원장), 김희선(한국제지노동조합 문화부장), 나준수(고려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남봉의(현대정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노우정(용인 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은호(김제 축협노동조합 지부장),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류봉식(광주지역 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류수현(한일이화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시현(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류정기(삼신생명노동조합 위원장),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장), 문성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민영문(DCM노동조합 교선부장), 박근수(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박병렬(금호타이어노동조합 사무국장), 박상길(한빛증권지부위원장), 박성기(동부생명노동조합 지부장), 박영길(고려운수 조직부장), 박인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박종문(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 사무국장), 박진홍(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해양 사무국장), 박진희(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사무차장),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박한용(한일이화노동조합 후생복지부장), 박현주(보건의료노동조합 조직부장), 박형란(축협중앙회 여성부장), 박형

석(효성노동조합 법규부장), 박희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협국장), 배강욱(진로쿠어스맥주노동조합 위원장), 서지현(삼신생명노동조합 후생복지부장), 선향건(동서식품노동조합 지부장), 성기봉(서울상용직노동조합 구로지부장), 성현식(한국중공업노동조합 조사통계차장), 손성국(유성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송명주(대우차 비대위 대의원), 송진규(축협중앙회 부위원장), 송찬섭(현대정공노동조합 위원장), 신경선(축협중앙회 부위원장), 신풍훈(의료보험노동조합 경인본부 본부장), 신문기(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신영화(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무장), 심영란(동부생명노동조합 정책부장), 안용관(미진화학노동조합 위원장), 양용석(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 양우식(데이콤노동조합 교섭국장), 양우영(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성남지역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양태조(하남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양호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 사무국장), 염성태(대우증 위원장), 염홍관(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쟁의부장), 오종쇄(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오진수(만도기계노동조합 조직국장), 우상훈(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부일분회 위원장), 우창구(공항공단노동조합 후생국장), 원승희(포천 축협 지부장), 원치한(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경인 본부 선전부장), 위장근(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병태(전국강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수한(전국운송하역노조 청석공영 지부장), 윤용석(만도기계노동조합 법규부장), 이갑용(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공석(전국일용직노동조합 위원장), 이규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근용(효성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이동언(동방노동조합 사무장), 이병진(서울지역 출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이보희(현대자동차노동조합 마북 지부장), 이상규(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서비스 지부장), 이상춘(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 이선종(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교선국장), 이성우(진안섬유노동조합 회계감사), 이성일(만도기계노동조합 교선부장), 이수호(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승웅(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시정(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경기 교선부장), 이영환(MBC노동조합 대협국장), 이우영(현대자동차노동조합 회계감사), 이재관(현대중공업노동조합 참글페杵두쇠), 이재만(한국중공업노동조합

지부장), 이정식(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이정훈(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정훈(천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종건(대우노동조합 동래 지부장), 이주호(대구 진안노동조합 위원장), 이준용(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문화국장), 이진희(서울지역 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진희(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주(광명연마노동조합 부위원장), 이형기(효성창원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혜진(서울지역 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 총무부장), 이호준(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책3부장), 이홍재(한일이화 노동조합 조직부장), 이효승(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쟁의부장), 이희원(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인선교(축협노동조합 수원지부장), 임규석(축협노동조합 전주지부장), 임성호(현대정공노동조합 부위원장), 임춘식(서울 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 교선부차장), 장달수(서울경기지역설계노동조합 위원장), 장수정(동부생명노동조합 부위원장), 장순길(대우자동차노동노합 조직실장), 장영미(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사통계부장), 전사동(서울상용노동조합 관악지부장), 전상하(부산우유노동조합 위원장), 전우일(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 선전부장), 전충길(현대자동차노동조합 남양 지부장), 정상은(병원노동조합연맹 총무국장), 정영운(삼신생명노동조합 부위원장), 정홍체(광주지역 금속노동조합 분회장), 조병춘(기아자동차노동조합 정책부장), 조상희(기아자동차노동조합 복지부장), 조성호(뉴코아노동조합 총무부장), 조한균(만도기계노동조합 대의원), 조희만(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주미순(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부장), 지균호(서울상용직노동조합 용산지부장), 지성의(기아자동차노동조합 문제부장), 진기석(유성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진승우(청주 원일교통노동조합 위원장), 차광호(한국합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채운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천창수(금속연맹 울산본부장), 최동식(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최문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종진(진안섬유노동조합 부위원장), 최희정(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지부장), 한승수(충북민주노총 청주지역택시 위원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창권(효성노동조합 창원교육부장), 홍승육(삼동노동조합 위원장), 홍태엽(한일이화노동조합 조사통계부

장), 황경학(여주 축협 지부장), 황병호(현대정공노동조합 운영위원), 황영주(한국중공업노동조합 조직2부장), 황영호(전국민주선박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회단체

강민철(서울연합 조직부장), 강희남(범민련 의장), 권오창(민족통일회의 의장), 권현태(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근수동(안양노련 연합회 지역장), 기세문(광주양심수후원회장), 김규철(민자통 상임의장), 김근래(민주노동당 동부지부 사무처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기창(전국연합 조직국장),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삼연(청진당 기획조정실장), 김재수(용보련 사무국장), 김종임(자통협 정책위원), 김지원(용인노동자회 회장), 김판태(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무국장),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박석운(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순희(노동사목지도위원), 박용진(민주노동당 기획부장), 박희택(청년진보당 대전 서구을 위원장), 백기완, 변규철(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 사무국장), 송복남(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오병운(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오세철(노동자의 힘 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온재철(서울민주노동자회 기획국장) 이경원(경기남부 범투본 위원장), 이명부(풀물파허울립 운영위원), 이상현(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상희(민가협 간사), 이자영(청년진보당 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이종희(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이진수(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이환재(전국노련의장), 인미숙(청진당 마포을 위원장), 임중혁(홍교선 석방 공대위 임시 집행위원장), 임태훈(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소 원장), 전형재(청년진보당 정보통신위원회 사무국장), 정광훈(전농 의장), 정부중(성남실업자대책위 공동대표), 정윤광(민주노동당 조직위원장), 정희진(청년진보당 성북위원장), 조순덕(민가협 부회장), 차미경(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최규엽(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최기영(민주노동당 기획부장), 최종원(하남 광주 일하는 사람들 대표), 홍근수(범국본 공동의장), 홍순석(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 사무처장)

학술계

김성구(민교협 정책위원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손호철(민교협의장, 서강대 부교수), 송주명(한신대 조교수)

학생

박경열(서울대 총학생회장), 이강현(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종호(성공회대 교투국장), 전형철(성공회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찬우(경기동부총련 집행위원장)

외 '99 노동자·민중대회 참가자 8999명